

##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 □ 개정이유

- 「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 개정에 따라 분장사무, 직급·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업무 전담 정원 별도 표기(안 제5조)
-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의 장(담당관 및 과장 포함) 및 사업소장의 직급 변경(안 별표1, 별표3)
- 부서별 사무분장표 변경(안 별표6)
  - 지방이양사무(행정지원과 → 자치협력과)
  - 「노동조합법」 개정에 따라 과주시를 계약외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등에 관한 사항 신설(기업지원과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 변경(안 별표7)
  - 과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증가 (1,862명 → 1,898명 / +36명)
  - 직급 배정(6급 4명, 7급 10명, 8급 10명, 9급 12명)
  -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업무 전담 정원 지정 (26명)

### □ 개정규칙안: 별첨

#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### □ 관계법령발췌서: 별첨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및 제30조
- 「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 제2조, 제28조 및 제29조

관련사업계획서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: 비용추계서 별첨

사전예고 결과: 예정

○ 입법예고 기간: 2026. 5. 15. ~ 2026. 6. 4.(20일간)

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예정

○ 심의회 개최일: 2026. 6.

기타 참고사항: 별첨

○ 현행 규칙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, 부패영향평가, 규제영향분석 결과서

과주시 규칙 제 호

##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표시한다”를 “표시하고, 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표 하단에 별도로 표시한다”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3, 별표 6,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부서		행정지원과 ☎ 940-8604
입안자	행정지원과장	최연경
	조직팀장	안현정
	담당자	박장호

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

###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「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

제2조(직급·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) ① 과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의 국장·과장 및 담당관,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,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8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9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 및 관련조문

- 「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(일부개정 2026. 4. 23) 제26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(연간)

- (전제) 2026년도 9급 초임 연봉(봉급+수당) 추정치: 약 3,428만원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 분		계	일반직		
			4급	5급	6급이하
계	인 원	36	-	-	36
	예산액	123	-	-	123

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2026년 9급 공무원 보수 인상률(6.6%)을 고려한 인건비 추계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총 소요액	641	62	131	140	149	159
인 건 비	641	62	131	140	149	159

\* 2026년도는 6개월분(7~12월)으로 계산

다. 재원조달방안: 필요시 2026년 추경예산 편성

## 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 없음

4. 작성자: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조직팀장 안현정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
세 입		641	62	131	140	149	159
인 건 비		641	62	131	140	149	159
세 출		641	62	131	140	149	159
인 건 비		641	62	131	140	149	159
재원 조달		641	62	131	140	149	159
자체 수입	소 계	641	62	131	140	149	159
	지방세	641	62	131	140	149	159

□ 기타 참고사항: 현행 규칙

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( 제정) 1996.03.01 규칙 제 17호

(일부개정) 2025.12.26 규칙 제81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담당관 및 실·국·소·본부장은 시장·부시장을 보좌하고, 과장은 실·국·소·본부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1. 7. 13., 2023. 12. 26.>

제3조(직급) ① 파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의 실·국장과 담당관·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3. 12. 26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소통홍보관, 미래전략관 및 첨단도시정보과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, 감사관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한다. <개정 2022. 12. 28., 2023. 2. 13.>

③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(문산보건센터장을 포함한다)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, 파주보건소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,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으로 읍·면·동에 농업인상담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8., 2024. 12. 26., 2025. 6. 30.>

④ 사업소의 본부장 및 과장·소장·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1. 7. 13., 2022. 12. 28., 2023. 12. 26.>

⑤ 삭제 <2021. 7. 13.>

⑥ 읍·면·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23. 12. 26.>

제4조(사무분장) ① 본청의 담당관·과, 직속기관·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. <개정 2023. 12. 26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(사무의 내용이 서로 다른 실·국·소·본부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)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. 다만, 실·국·소·본부 내 부서간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·국·소·본부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. <신설 2023. 12. 26.>

제5조(직종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) 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·직종별·직급별·직렬별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) 정원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한다. <개정 2020. 12. 28.>

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총계 중 한시기구의 부서와 직급·직렬 및 운영시한을 별표 8과 같이 한다.

제6조(정원의 배정) 정원관리기관별 보좌·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□ 기타 참고사항: 성별영향평가 결과서



파 주 시



수신 행정지원과장  
(경유)
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6A경기파주019)

1. 행정지원과-13864(2026.05.07)호와 관련합니다.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,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여성가족관장희

여성정책전문위원	여성정책팀장	여성가족과장	2026. 5. 11.
원 권문영	이영심	한경희	
협조자			
시행 여성가족과-9635	(2026. 5. 11.)	접수 행정지원과-14073	(2026. 5. 11.)
우 10932	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(아동동)	/ <a href="http://www.paju.go.kr">http://www.paju.go.kr</a>	
전화번호 031-940-8684	팩스번호 031-940-4419	/ <a href="mailto:myjihee@korea.kr">myjihee@korea.kr</a>	/ 비공개(5)

□ 기타 참고사항: 부패영향평가 결과서



파 주 시



수신 행정지원과장  
(경유)

제목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및 「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 일  
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

1. 행정지원과-13866(2026. 5. 7)호와 관련됩니다.
2. 「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」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□ 부패영향평가 결과

관리번호	주관부서	자치법규명	평가결과
2026-20	행정지원과	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	원안동의
2026-21	행정지원과	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	원안동의

- 붙임 1. 결과통보서 각 1부.  
2. 규칙 개정안 각 1부. 끝.

감 사 관

주무관 윤수진 감사2팀장 이선 감사관 전결 2026. 5. 11.  
협조자 유대승

시행 감사관-5658 (2026. 5. 11.) 접수 행정지원과-14038 (2026. 5. 11.)  
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, 감사관 (아동동) / http://www.paju.go.kr  
전화번호 031-940-5840 팩스번호 031-940-4089 / yoon55@korea.kr / 비공개(5)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관 리 번 호	2026-20		
자치법규명	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		
평 가 담 당 부 서	감사관	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	행정8급 윤수진
주 관 부 서	행정지원과	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	행정7급 박장호
평 가 결 과 통 지 일	2026. 5. 8.		
통 보 내 역	원안동의		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조 치 사 항	
-	-	-	

□ 기타 참고사항: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

인쇄 : 전병언 / 행정지원과 (2026-05-13 10:40:07)



파 주 시



수신 행정지원과장  
(경유)

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[「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 외 1건](일부개정안)

- 1. 행정지원과-13867(2026. 5. 7.)호와 관련합니다.
- 2.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□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

소관부서	자치법규명	심사의견
행정지원과	「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	규제 해당사항 없음
	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	규제 해당사항 없음

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각 1부. 끝.

예산법무과장 

주무관	권성원	규제개혁통계 팀장	김선정	예산법무과장	조우현	2026. 5. 8.
협조자						
시행	예산법무과-8160	(2026. 5. 8.)	접수	행정지원과-13924	(2026. 5. 8.)	
우	10932	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(아동동)		/	www.paju.go.kr	
전화번호	0319404171	팩스번호	0319404059	/	ksw8732@korea.kr	/ 비공개(5)

